

변리사스쿨 12월 전국모의고사 정오표

【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

[9번] 2번 선지 이의 신청.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문 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지에서는 "참여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 처리되어 이의신청합니다.

답변) 기존 정답 유지.

문제풀이 강의에서 강조 드렸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푸실 때도 "할 수 있다"를 임의규정 vs 강행규정 문제로만 접근하시면 정답을 찾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문제는 참여결정 취소사유를 묻는 것이 취지이며, 임의규정 vs 강행규정 구분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반려사유를 묻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기출문제 다회독하시고, 지문 중 가장 확실한 것 찾는 연습하시면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16번] 3번 문항에서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전 '취하간주' 되었다면 선출원에 관한 서류는 열람 불가하다는 3번 문항도 옳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이의 드립니다.

답변) 기존 정답 유지.

해설과 같이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제1호 내용입니다.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강조 드린 부분 있으니 필기 참고해주시면 도움 됩니다 :)

【민법개론 이의신청 내용】

[21번] 민법 21번 선지 1번 ‘~ 저당권자가 취득하게 된 ~’ → ‘~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이 맞는 문장으로, 답이 1번, 5번으로 2개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정답 유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저당권자"를 "저당권설정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의고사이고 내용상 수험생들이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은 아니어서 복수정답처리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정답 처리해서 수험생들이 내용확인하는 수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그러한 것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